의안번호	2203916
의 뢰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5.
추계번호	24A3736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2(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)	○ 기업·연구기관·전문기관·대학 등(이하 “기업등”이라 한다)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,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9조의3(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)	○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.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17조(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받은 경우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9조의2(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)	○ 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2	안 제9조의3(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)	
3	안 제17조(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등)	○ 현행 사업("산업기술보호 국내·외 실태조사", 2024년 예산 2억원)의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2. 상세 사유

❑ 안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면 관련 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증가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아니지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은 100여개임

-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된 기술은 76개이며, 동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124개임[1)]

○ 개정안에 따라 100여개 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에 대해 통지를 받고 판정을 신청할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(분야별 전문위원회)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

- 안 제19조의2제4항은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○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회의예산으로 1억 7,600만원

1)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수는 2024년 6월 기준임

이 편성되어 있으며(2024년 예산 기준), 개정안에 따라 회의개최 횟수가 늘어나더라도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이고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

❑ 안 제9조의3에 따라 기업·연구기관·전문기관·대학 등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는데, 산업기술보호위원회(분야별 전문위원회)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안 제19조의3제3항은 국가핵심기술 등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○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회의예산으로 1억 7,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(2024년 예산 기준), 개정안에 따라 회의개최 횟수가 늘어나더라도 예상되는 비용은 한시적일 것으로 판단됨

- 또한,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더라도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지는 않으므로 회의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[2)]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

2)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2021년 이후 2024년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은 총 285건이며, 이 중 96건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됨